

의안번호	2202944
의 퇴 인	김성원 의원
회 답 일	2024. 9. 23.
추계번호	24C3046

취약청년 자립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취약청년 자립지원 기본계획 수립 등을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31억 200만원(연평균 6억 2,0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취약청년 자립지원 기본계획 수립·시행(안 제5조)	30	—	—	—	—	30	6
취약청년 고용·주거·교육 실태조사 실시(안 제7조)	200	—	—	200	—	400	80
취약청년 자립지원 및 보호위원회 운영(안 제8조)	4.4	4.4	4.4	4.4	4.4	22	4.4
취약청년 자립준비 박람회 개최(안 제18조)	530	530	530	530	530	2,650	530
추가재정소요	764	534	534	734	534	3,102	620

주: 합계는 단수조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취약청년 자립지원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의무규정
2	안 제7조(실태조사)	보건복지부장관은 취약청년의 고용, 주거, 교육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함	의무규정
3	안 제8조(취약청년 자립지원 및 보호위원회)	취약청년의 자립지원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취약청년 자립지원 및 보호위원회를 둠	의무규정
4	안 제9조(취약청년 자립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할 수 있음 1.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3.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5	안 제10조(청년자립준비학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약청년을 대상으로 자립준비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청년자립준비학교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재량규정
6	안 제11조(사회적 가족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률, 취업, 경제 등의 분야에서 자립지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자립지원상담자”)와 취약청년을 연결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는 사회적 가족제도를 시행할 수 있음	재량규정
7	안 제12조(청년자립준비주택 공급·운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청년이 자립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청년자립준비주택을 공급·운영할 수 있고, 이 경우 공급·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8	안 제13조(심리상담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청년과 취약청년 가족의 정신건강을 지원하기 위하여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재량규정
9	안 제14조(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청년 자립지원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청년 간의 정보 공유와 상부상조 등을 위한 자조모임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10	안 제15조(지역사회 취약청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의 취약청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취약청년 자립지원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취약청년 자립지원등을 위한 기관 또는 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취약청년 통합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함	의무규정
11	안 제16조(취약청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취약청년 관련 정보의 효율적 처리, 정보공유 및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등 통합지원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약청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	재량규정
12	안 제17조(전담부서의 설치 및 인력의 배치)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약청년의 자립지원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음	재량규정
13	안 제18조(박람회의 개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청년의 자립지원등을 위하여 주거, 심리, 건강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취약청년 자립준비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음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	○ 여성가족부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
2	안 제7조(실태조사)	○	○ 보건복지부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
3	안 제8조(취약청년 자립지원 및 보호위원회)	○	○ 국무조정실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
4	안 제9조(취약청년 자립지원)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5	안 제10조(청년자립준비학교)	×	
6	안 제11조(사회적 가족제도)	×	
7	안 제12조(청년자립준비주택 공급·운영)	×	
8	안 제13조(심리상담 지원)	×	
9	안 제14조(단체 등에 대한 지원)	×	
10	안 제15조(지역사회 취약청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	×	
11	안 제16조(취약청년통합지원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	
12	안 제17조(전담부서의 설치 및 인력의 배치)	×	
13	안 제18조(박람회의 개최)	○	○ 국무조정실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안 제7조~제17조에 관하여는 제정안 시행 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지원 대상자 수 등 추계에 필요한 정보의 부재로 합리적인 추계가 어려워 추계대상에서 제외

○ 안 제2조¹⁾는 “취약청년”을 장애가 있는 청년, 다문화가족 청년, 보호대상

1) 「취약청년 자립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청년, 가족돌봄 청년, 한부모인 청년, 아동 또는 청소년 복지시설 퇴소 청년, 고립·은둔 청년 중 ‘가구의 소득, 부채 등 재산상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청년’으로 정의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지원 대상 규모를 추정하기 어려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약청년 자립지원(안 제9조), 청년자립준비학교 설치·운영(안 제10조), 사회적 가족제도(안 제11조), 청년자립준비주택 공급·운영(안 제12조), 심리상담 지원(안 제13조), 취약청년 지원 기관·단체 지원 및 자조모임 운영 지원(안 제14조), 지역사회 취약청년 통합 지원체계 구축·운영(안 제15조), 취약청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안 제16조), 전담부서 설치 및 인력 배치(안 제17조) 등을 실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제정안에 따른 지원 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을 추정하기 곤란
- 또한 취약청년 자립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해짐에 따라 현행 시범사업이 확대되거나 신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사업의 확대 및 추진 규모 등을 추정하는 데 한계가 있음
 - － 보건복지부는 청년의 자립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표 2] 참고)하고 있으며, 시범사업을 통해 선도모델을 마련하여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나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계획은 미정

-
1. “청년”이란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2. “취약청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으로서 그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부채 등 재산상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청년을 말한다.
 -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청년
 - 나.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년 및 부모 모두 외국인인 가정의 청년. 이 경우 청년의 출생지를 불문한다.
 - 다. 부, 모 또는 본인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청년
 - 라. 고령,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간호·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는 청년
 - 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인 청년
 - 바.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제4호·제5호의 시설에서 퇴소한 청년
 - 사.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청년
 - 아. 사회·경제·문화적 원인 등으로 인하여 집 등의 한정된 공간에서 6개월 이상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학업수행이나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표 2] 청년 자립지원 관련 주요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내용	2024년도 예산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전담지원 시범사업	※ 인천, 울산, 충북, 전북 4개 광역 시·도에 청년미래센터를 개소하여 2024~2025년 시범사업으로 선도모델 마련 추진 중 · 가족돌봄청년 선제발굴 위한 지역 내 유관기관 핫라인 연락체계 구축, 밀착형 사례관리 제공 등을 위해 전담팀 운영 － 자조모임 운영·관리 지원: 가족돌봄청년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한 돌봄 경험 공유 및 정서 관리 등을 위해 자조 모임 운영·관리 지원 － 자기돌봄비 지원: 가족 돌봄으로 인해 본인을 돌볼 기회가 없던 청년 본인의 건강관리, 문화경험, 자기개발 등(의료·문화여가·진로·교육비 등) 위해 1인당 50만원의 자기돌봄비 지원 · 고립·은둔 청년 발굴, 상담 등 사례관리 지원 및 연계, 사후관리를 담당할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총 56명), 대상자 발굴 및 상담, 사례관리 제공·연계(프로그램 제공 포함), 사후관리 등 원스톱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비 지원 등 － 심리·정서 회복 지원: 고립·은둔 청년(개소당 80명) 대상으로 심리 상담, 치유적 관계 및 사회관계 형성 등 심리·정서 회복 지원 － 은둔청년 특화지원: 은둔 청년(개소당 20명) 대상으로 공동거주 공간에 입소, 일상생활관리 연습(수면, 식사, 위생), 규칙 준수 및 소통 훈련 등 지원 － 고립·은둔 청년 가족지원: 고립·은둔 청년의 가족(개소당 160명) 대상 청년과의 소통 및 관계 회복, 가족 간의 자조모임 등 지원	국비 3,403 (국고보조율 70%)

자료: 보건복지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II-1)」 및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이 외의 재정수반요인(안 제5조·제7조·제8조·제18조)에 대해서는 유사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

- 제정안 부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취약청년 자립지원 기본계획 수립·시행(안 제5조)

- 제정안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 주기로 취약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여성가족부가 2023년 수행한 “신소의 청소년 발굴 및 지원방안 연구” 용역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
 - 여성가족부는 가족돌봄 청소년, 은둔고립 청소년, 채무상속위기 청소년, 기타 신소의 청소년에 대한 지원 방안 도출을 위해 2023년 “신소의 청소년 발굴 및 지원방안 연구” 용역(3,124만원 소요)을 실시하였음
 - 본 추계에서는 취약청년 자립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에 “신소의 청소년 발굴 및 지원방안 연구” 용역 사례와 동일한 약 3,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함
- 추계결과, 취약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3,000만원으로 추계

[표 3] 취약청년 자립지원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취약청년 자립지원 기본계획 수립·시행(안 제5조)	30	-	-	-	-	30	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취약청년 고용·주거·교육 실태조사 실시(안 제7조)

- 제정안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 주기로 취약청년의 고용, 주거, 교육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의 “2023 자립지원 실태조사” 사례를 참고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추계

- 본 추계에서는 보건복지부가 “2023 자립지원 실태조사”를 위해 소요한 2억원의 단가를 적용하되, 추계기간 단가가 변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추계결과, 3년 주기로 약청년의 고용, 주거, 교육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4억원으로 추계

[표 4] 취약청년 고용·주거·교육 실태조사 실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취약청년 고용·주거·교육 실태조사 실시(안 제7조)	200	-	-	200	-	400	8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취약청년 자립지원 및 보호위원회 운영(안 제8조)

□ 제정안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취약청년 자립지원 및 보호위원회를 두어 운영하는 경우 회의수당 등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취약청년 자립지원 및 보호위원회 운영에 회의수당만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추계

- 제정안은 위원회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원회는 총 10인으로 구성하고 5명의 위촉직 위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가정
- 연간 회의는 4회 개최하고 회의수당은 위촉직 위원 1인당 22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
 - 국무조정실의 2024년도 예산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전문위원회의 회의수당 단가가 22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준용

- 추계결과, 취약청년 자립지원 및 보호위원회를 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2,200만원으로 추계

[표 5] 취약청년 자립지원 및 보호위원회 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명, 회)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회의수당 단가(A)	0.22	0.22	0.22	0.22	0.22	-	-
인원 수(B)	5	5	5	5	5	-	-
회의개최 횟수(C)	4	4	4	4	4	-	-
추가재정소요(A×B×C)	4.4	4.4	4.4	4.4	4.4	22	4.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라. 취약청년 자립준비 박람회 개최(안 제18조)

- 제정안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취약청년 자립준비 박람회를 개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국무조정실의 “청년의 날 기념 및 주간행사” 사례를 참고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추계

- 국무조정실은 2024년 청년정책박람회, 컨퍼런스 및 교류회, 경진대회 등의 청년의 날 기념 및 주간행사에 5억 3천만원의 예산을 편성
- 본 추계서는 취약청년 자립준비 박람회 개최에 국무조정실 사례와 동일한 비용이 소요되고 추계기간 비용 단가가 변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추계결과, 취약청년 자립준비 박람회를 개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26억 5천만원으로 추계

[표 6] 취약청년 자립준비 박람회 개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취약청년 자립준비 박람회 개최(안 제18조)	530	530	530	530	530	2,650	53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 본 추계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김우림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우림	02-6788-3738	wrkim@assembly.go.kr